



HANKUK
Lawfirm

Newsletter

시행령 제249/2026/NĐ-CP호의 신규정

추방 집행, 출국 대기 기간 중 체류 시설 내 체류자에 대한 관리 조직 및 제도

연락처:

info@hankuklawfirm.com

0942 339 063

<https://hankuklawfirm.com/en/>



시행 효력

본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며, 출국 대기 기간 중 체류자에 대한 관리 조직 및 제도를 규정한 2020년 6월 10일자 정부 시행령 제65/2020/NĐ-CP호를 대체합니다.

시행령 65/2020/NĐ-CP호

- 출국 대기 기간 중 체류 시설 내 체류자에 대한 관리 조직 및 제도에 관한 규정
- 체류자 관리·감독에 관한 체류 시설의 책임 규정
- 체류자 관리에 중점
- 식사, 의복, 숙소, 진료, 통신, 면회, 물품 수령, 장례 등에 관한 제도 규정

시행령 249/2026/NĐ-CP호

-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추방 집행, 출국 대기 기간 중 관리 조직 및 제도까지 포괄적으로 규정
- 추방 집행의 각 단계별 관리 기관 및 체류 시설의 책임을 계승하되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
- 추방 결정의 집행, 인계·인수, 호송, 출국 대기 기간 중 관리에 관한 절차를 전면적으로 보완
- 기본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새로운 관리 절차에 맞게 갱신·보완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행령 제249/2026/ND-CP호를 숙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에게 추방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함
- 관련 절차 발생 시 권한 있는 기관과 능동적으로 협조하기 위함
- 신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



추방형을 집행받는 자
(형사 판결에 의한 경우)



행정처벌을 받은 외국인
(추방 처분 형태)



형기를 마친 외국인
(출국 대기 중)



긴급 구금된 자
(인도 요청 이전 단계)

체류자에 대한 제도

(제14조, 제15조)



3 m² - 4 m²

- 1인당 3m² (침대, 받침대, 이불·모기장 구비)
- 1인당 4m² (임산부 또는 영유아 양육 여성의 경우)
- 별도의 의료/정신과 격리실 구비



월별 식량 기준

설·명절 기간 평상시 기준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식사 제공

17kg

멥쌀

15kg

채소

1.5kg

육류

1.5kg

육류

5개

계란



의복

일반 천 의류 1~2벌 지급



면회 제도 (제18조)

면회 대상자

체류자는 다음 대상과 면회할 수 있습니다:

- 친족;
- 적법한 대리인.

이 외에도, 체류 시설장이 체류자의 적법한 권익 및 관리·범죄 예방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검토·결정하는 경우, 베트남의 기관·단체 대표 또는 기타 개인도 면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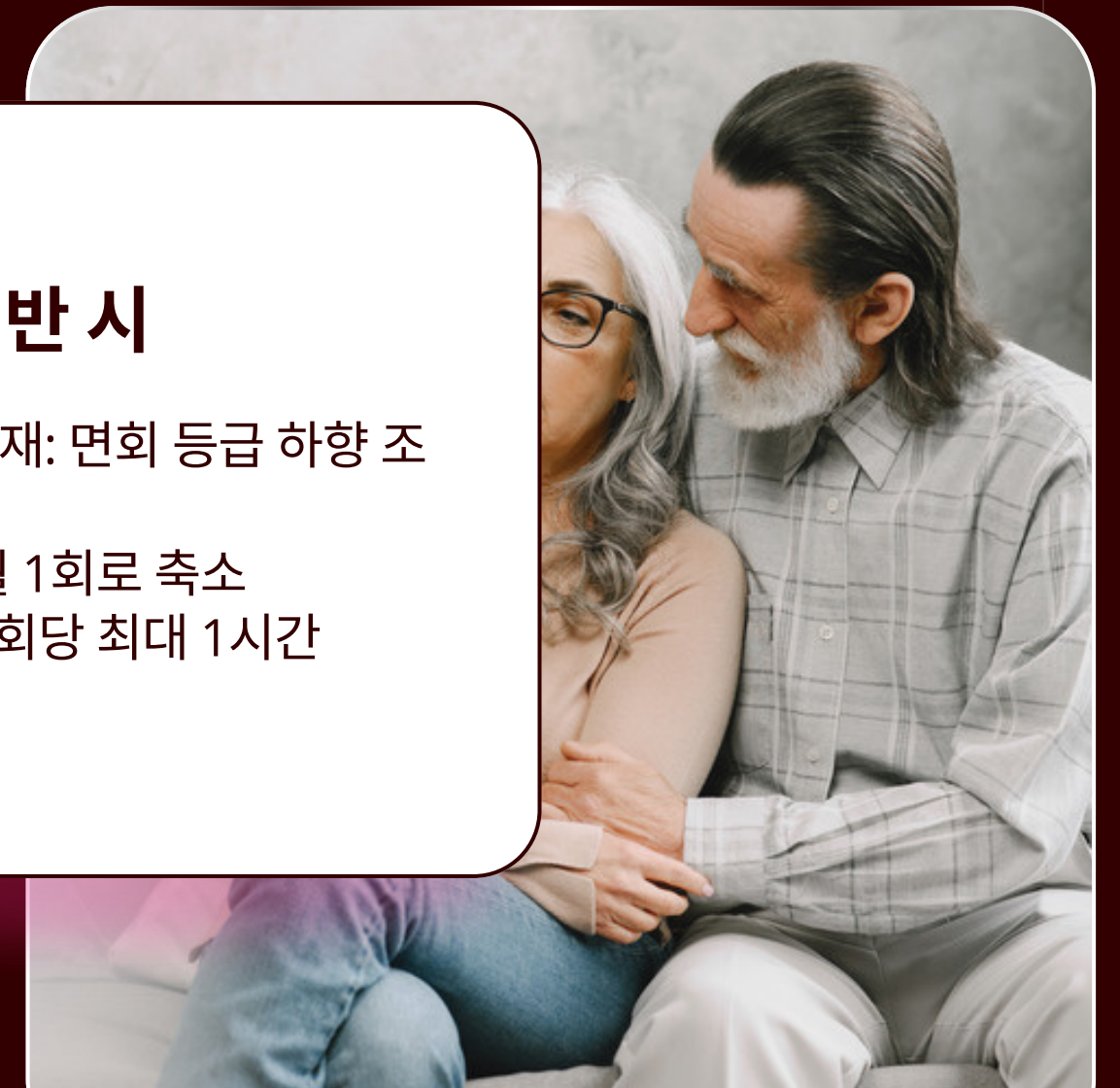
- 빈도: 주 1회
- 시간: 1회당 최대 2시간
- 인원: 최대 3명 (시설장 승인 시 최대 5명까지 가능)

부부 면회 (별실 이용)

- 조건: 규정 준수 상태 양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빈도: 월 1회
- 시간: 최대 24시간

규정 위반 시

- 적용 제재: 면회 등급 하향 조정
- 빈도: 월 1회로 축소
- 시간: 1회당 최대 1시간



면회 절차

체류자가 배우자와 별실에서 면회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의 배우자는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을 받은 혼인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양측 모두 별실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체류 시설장에게 제출하고 시설장의 검토·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를 면회하고자 하는 친족 또는 적법한 대리인은 소정 양식의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유효한 신분증명서(여권, 신분증, 국민신분증, VNeID 전자신원인증계정 또는 기타 적법한 서류)를 제시하여 체류 시설이 해당 신청자가 정당한 대상자인지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회 실시 여부는 체류 시설장이 실제 여건, 시설의 근무 시간 및 체류자 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을 근거로 결정합니다.



면회 및 영사 접견 절차 (제18조, 제19조)

- 반드시 보관소에 위탁 대상: 현금, 귀금속, 신분증명서, 신용카드
- 선물/서신 수령: 금지 품목을 제외하고 담당 직원의 검사를 거친 후 수령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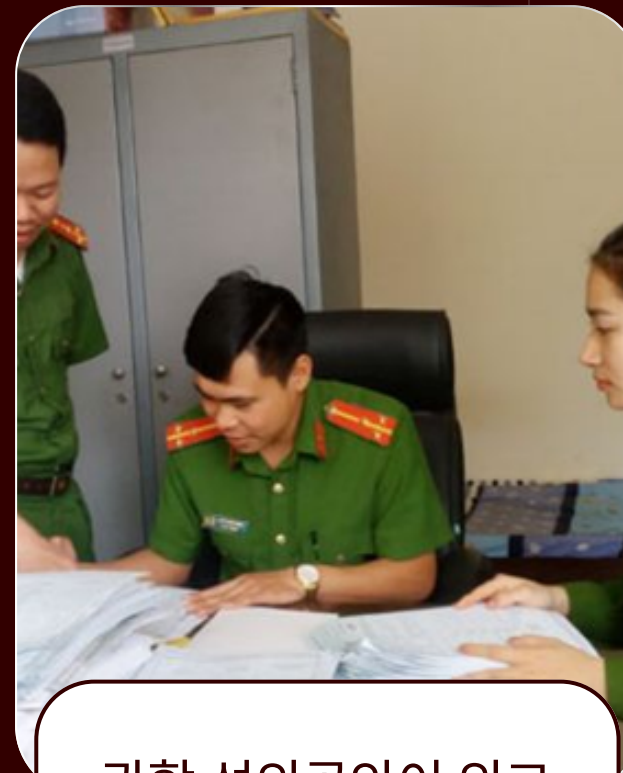
외국 기관이 외교부
에 공문 발송

+ 3 일



외교부가 관할 성의
공안에 통보

+ 5 일



관할 성의공안이 외교
부에 회신

+ 2 일



외교부가 소개장 발급



위기 대응 조치

(제9조, 제13조, 제24조)

규정 위반/저항 발생 시:

조서 작성

제압

독방 격리

도주 시 지명수배 절차:



시설이 조서를 작성하고 즉시 성의 급
기관에 보고



성의 공안이 외교부/영사관에 통보하
고 지명수배 결정을 발부



재체포 또는 자수 시: 조서를 작성하고
체류 시설로 재수용한 후 지명수배 해
제 결정을 발부



추방 및 강제 출국 조치

(제11조)



체류 시설



지정 경로에 따른 호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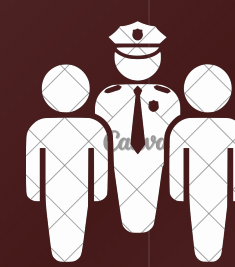
출국 검문소

최종 통보



출국 24시간 전
체류 관리 부서 및
출입국 관리 기관
에 통보

국경 검문소 호송



성의 공안이 호송
을 실시.
육로를 통한 추방
은 야간에 실시하
지 않음.

항공편 강제



자진 협조하지 않을 경
우, 항공사와 협력하여
국제항공법에 따라 직접
호송 실시

01. 감정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성의 급 수사기관 및 검찰청에
통보

02. 국제 통보

영사관/유가족과 연락하기 위해 외교부에 통보

03. 시신/유골 인수

- 친족은 시신 인수 신청서를 48시간 이내에 제출
해야 함 (비용은 친족 부담)
- 유골 인수는 사망 후 3년이 경과한 후에만 허용됨



체류자 사망 시 처리 절차 (제22조, 제23조)

04. 장례 책임

인수자가 없는 경우, 국가가 다음 비용을 부담한다: 목관 1개, 의
류 1벌, 수의용 천 4m², 기타 비용은 쌀 100kg에 상당하는 금액



HANKUK
Lawfirm

Thank You

연락처

info@hankuklawfirm.com

0942 339 063

<https://hankuklawfirm.com/en/>